

울산지방법원 2021. 11. 3 선고 2019가단11323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
담당변호사 김수정

피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혜린
변 론 종 결 2021. 10. 13.
판 결 선 고 2021. 11. 3.

주 문

1.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2. 10.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3. 5. 10. C 주식회사와 사이에 C 주식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, 당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 회사의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 그 후 2018. 12. 12. 당좌부도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, 원고는 2019. 1. 28. 위 은행에게 42,790,1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
나. 원고는 C 주식회사 및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차전5367호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. 2. 13. “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42,812,472원 및 그 중 42,790,106원에 대하여 2019. 1. 28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”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, B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9. 3. 8. 확정되었다.

다. 한편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8. 12. 10.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그에 따라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2018. 12. 10. 접수 제167706호로 채권최고액 173,138,125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

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, 그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,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그 후 원고가 2019. 1. 28. B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,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가)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).

갑 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합계 869,000,000원(= 296,000,000원 + 303,000,000원 + 270,000,000원)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만이 있었던 반면, 소극재산으로는 D은행에 대하여 206,544,339원,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153,820,909원, E 주식회사에 대하여 229,449,990원, F에 대하여 8,000,000원, 원고에 대하여 173,138,125원, 주식회사 G에 대하여 13,580,050원, 주식회사 H에 대하여 7,804,710원, 주식회사 I에 대하여 1,639,000원, J 주식회사에 대하여 12,650,000원, K조합에 대하여 206,259,654원, L에 대하여 10,000,000원, M에 대하여 29,370,000원, N 주식회사에 대하여 265,880,701원, O에 대하여 200,000,000원, P에 대하여 10,914,821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합계 1,529,052,299원에 이르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,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) 또한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B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,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

생기는 것을 인식하였거나,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.

3) 소결론

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

1) 피고의 주장요지

피고는 2017. 9. 20.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따른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, 그 당시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2) 판단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.

올바 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고는 2017. 9. 20. C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액 181,500,000원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, 그에 따라 2018. 11.경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이 173, 136,458원에 이르는 점,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그 대표이사인 B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, 피고는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C 주식회사 측의 재산상태가 나빠지자 2018. 12. 10. 비로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진현지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. [집합건물]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울산광역시 동구 오피스텔 동

[도로명주소]

울산광역시 동구

철근콘크리트구조

스라브지붕 17층

업무시설(오피스텔)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울산광역시 동구 대 6994.8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.8505㎡

(대지권의 표시)

1. 소유권대지권 6994.8 분의 39.549

2. [집합건물]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울산광역시 동구

[도로명주소]

울산광역시 동구

철근콘크리트구조

(철근)콘크리트지붕

10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울산광역시 북구 대 771.9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08.99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771.9 분의 35.4782

3. [집합건물]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울산광역시 북구 동 번지

[도로명주소]

울산광역시 북구

철근콘크리트구조

(철근)콘크리트지붕

오피스텔 및 연립주택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울산광역시 북구 구거 466㎡

2. 울산광역시 북구 구거 7㎡

3. 울산광역시 북구 구거 2㎡

4. 울산광역시 북구 구거 23㎡

5. 울산광역시 북구 구거 145㎡

6. 울산광역시 북구 제방 44㎡

7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3㎡
8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146㎡
9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103㎡
10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83㎡
11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198㎡
12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79㎡
13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202㎡
14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139㎡
15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20㎡
16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26㎡
17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126㎡
18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132㎡
19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3㎡
20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175㎡
21. 울산광역시 북구		구거 347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.3546㎡

(대지권의 표시)

1,2,3,4,5,6,7,8,9,10,11,12,13,14,15,16,17,18,19,20,21 소유권대지권

848.9 분의 35,7132. 끝.

